
풀뿌리 민주주의의 선진국 구현을 위한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

2007. 5.

지 방 세 포 럼

••• 목 차 •••

I. 지방세 현황	1
II. 지방세 환경여건	2
III. 지방세 제도개선	4
1.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 재 배분	4
2. 자주재원 확충노력 강화	9
3. FTA체제와 지방세제 정비	16
IV. 지방세 발전기반 확충	22
4. 지방분권 지원	22
5. 인적자원 개발	27
6. 정책지원체계 재확립	33
V. 주요 Agenda 로드맵	39

I. 지방세 현황

세수 규모

○ '07총 규모 : **38조 732억원**(자치단체 총 예산의 34%)

-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771천원(서울 1,017 경기 914, 전남 463)
- 1조원 이상 세목 : 16개 세목중 9개(취득·등록·주민·재산·자동차·담배·도시계획·지방교육세)

○ 지방재정자립도('07) : **평균 53.6%**('06년 대비 0.8% 감소)

- 전국 최고 88.7%(서울 본청), 최저 7.4%(경북 봉화군)

➡ 조세총액(185조 3,757억원)의 **20.5% 수준**으로 열악

※ 국가 : 지방 = 40.7 : 59.3(조세사용액 기준)

지방세 특징

○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불균형이 큼(수도권 : **58.9%** 점유)

○ 소득·소비과세 비중이 낮고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

- 재산과세(취득·등록·재산세 등) : **49.4%**(18조 7,983억원)
- 소득·소비과세(담배·주행세 등) : **31.1%**(11조 8,341억원)

➡ 국세의 지방이양이나 신세원 개발에 한계가 있고 지역의 소득·소비활동과 지방세수의 연계성 부족

II. 지방세 환경여건

1. 지방세 환경여건 및 방향

지방세 환경 여건	경제여건 및 미래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분권, 지방자치, 재정자치 등 역사적 명제에 걸 맞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요구가 거세질 것이며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가와 지방간 세원 재배분 논쟁 본격화 예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 회원국은 07년 이후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실업을 점차 감소예상 금년 하반기 이후 내수는 증가하고 수출은 둔화세를 나타낼 전망 부동산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서민주거 안정의 요구 상존



지방세제 개편의 “Basic Policy”

지방세 제도개선	Policy ①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 재 배분
	Policy ② 자주재원 확충노력 강화
	Policy ③ FTA 체제와 지방세제 정비
지방세 발전기반 확충	Policy ④ 지방분권지원
	Policy ⑤ 인적자원개발
	Policy ⑥ 정책지원체계 재확립



세입자치권 신장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혁신적인 지방세 제도 구현

2. 지방세제 개편의 주요과제

1. 국제·지방세간 세원 재 배분

- ① 지방소비세 도입
- ② 지방특별소비세 도입
- ③ 지방소득세 도입

2. 자주세원 확충노력 강화

- ① 진세원 개발 추진
- ② 비과세·감면 축소
- ③ 국·공유재산 과세 검토
- ④ 사업소세 확대개편

3. FTA체제와 지방세제 정비

- ① 농축산업 관련 세목 정비
- ② 부가세 성격의 목적세 정비
- ③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
- ④ 지방세법·조직 전문화

4. 지방분권지원

- ①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완화
- ② 과세자주권 확대
- ③ 지방세확충 인센티브 강화

5. 인적자원 개발

- ① 지방세연구원 설립
- ② 지방세무사 제도도입
- ③ 지방재경직 도입
- ④ 지방세 협력 네트워크 구성

6. 정책지원체계 재확립

- ① 지방세 과표제도 개선
- ② 지방세 정책통계 제공
- ③ 지방세 통합시스템 구축
- ④ 지방세 상담 기능 강화
- ⑤ 지방세 구제제도 발전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 지방세제 개편

Ⅲ. 지방세 제도개선

1. 국세·지방세 세원 재 배분

- ◆ 재산과세 위주인 지방세에 소득·소비과세를 확충하고
- ◆ 총 조세 중 20.5%인 지방세 비중 제고로 자치기반 공고화

□ 현 황

-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어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세수의 연계성이 부족 및 세수안정성 결여

계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기타
380,732억원 (100%)	57,516 (15.1%)	60,825 (16.0%)	187,938 (49.4%)	75,440 (19.5%)

※ 외국 소득·소비과세 : 일본 67.0%, 미국 62.8%, 독일 56.4%, 프랑스 10.3%

- 200년 이래로 총 조세 중에서 지방사용 비중은 증가했으나, 지방세 비중은 점점 낮아져 안정적 지방자치 발전에 차질 우려
- 종합부동산세 국세화, 국세와 지방세의 신장성 차이 등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조세사용 비중	55.1%	55.4%	55.5%	56.3%	58.4%	59.3% (총 185.4조원중 110.4조원)
지방세 비중	23.3%	22.4%	22.5%	22.0%	20.7%	20.5% (총 185.4조원중 38.1조원)

※ 과거 6년간('01~'07) 평균 신장율 : 국세 7.4%, 지방세 6.2%
 평균 증가액 : 국세 7.9조, 지방세 1.7조

□ 추진과제

구 분	추진방안	비 고
① 지방소비세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의 연계성 및 지방세수의 안정성 확보 ○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화 → 4.1조원(부가가치세 41조 1,631억원) ○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과세(배분) 기준 설정 	
② 지방특소세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인 특별소비세중 일부세원의 지방이양으로 「지방특별소비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 등 입장행위 - 유흥주점 등의 유흥음식행위 → 3.014억원(특소세 43,995억원의 6.9%) 	
③ 지방소득세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세소득할을 『지방소득세』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세방식 : 소득금액 과표, 단일세율 - 부가세방식 : 국세결정액 과표, 차등세율 → 독립세방식의 경우 국세의 지방이양 효과 : 약 1.5조 ○ 지역간 세원불균형이 완화되도록 설계 	

⇒ 국세의 지방이양 규모 : 약 5.9조원(현 지방세 38.1조 → 44조)
(지방세비중 : 20.5% → 23.7%)

□ 세부추진방안 검토

① 지방소비세 도입

< 도입방안 >

- 재산과세 위주인 지방세 체계에 소비과세를 확충함으로써 지방세수와 지역경제 연계성을 강화하고
- 세수의 안정성, 세원의 균등성·간편성 차원에서 부가가치세의 일정율(10%)을 지방으로 이양, 「지방소비세」 신설
 - 지방소비세수 : 4조 1,163억원('07 부가가치세 41조 1,631억원)
 - ※ 과거 5년간 평균 부가가치세 신장율 : 10.1%

< 도입시 주요고려사항 >

- 자치단체 간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과세(배분)기준 설정
 - 예) 과세(배분) 기준을 소비지수 50%, 역재정력지수 50%로 반영할 경우
 - 광역세의 수도권 점유율 61.6% ⇒ 56.7%, 변이계수 1.347 → 1.197로 완화
-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의 재정과다 현상 억제방안 마련
 - 자치구 조정교부금 또는 시·군 재정보전금으로 활용방안 검토

< 도입효과 >

- 지방교부세 : 감소 △ 7,919억원(지방소비세 41,163억원의 19.24%)
- 광역단체분 지방교부세재원의 일부가 시·군으로 이전됨에 따라 시·군의 만성적 재원부족 현상 일부해소
 - 시지역 7,830억원, 군지역 8,682억원

2 지방특별소비세 도입

< 도입방안 >

- 국세인 특별소비세중 일부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광역단체세로 「지방특별소비세」 신설
 - 골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 등 입장행위
 - 유흥음식점 등의 유흥음식행위
- 납세의무자와 세율 등은 현행의 특별소비세와 동일하게 운영
 - 징수방법 : 골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 또는 유흥주점의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징수
 - 신고·납부 : 특별징수의무자가 매월 말일까지 시장·군수에게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및 지방특별소비세 납부

< 도입효과 >

- '05부과기준 : 3,014억원 (특소세 43,995억원의 6.9%)

- 골프장·경마장 등 시설입장행위와 유흥음식행위는
 - 지방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에 대한 응의과세로 지방세적 성격을 갖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와의 수익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며, 해당지역에 외부불경제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 입장행위나 유흥음식행위는 지방세 부담 없이 재정수요만 유발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과세 필요
- 골프장·경마장 등 시설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국세인 특별소비세 과세하는 것은
 - 외부불경제효과 발생지역과 세수 귀속주체 간 괴리현상이 야기

3 지방소득세 도입

< 주민세 소득할의 문제점 >

- 현재 주민세소득할은 소득세액의 10%를 부가세로 과세함으로써 소득세의 누진구조로 고소득자가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지역간 불균형의 원인으로 작용
- 과세표준이 소득세나 법인세의 결정세액으로 중앙의 정책결정에 따라 조세감면 조치가 도입되면 지방세도 감소되는 결과 초래

< 도입방안 및 효과 >

- 현행 주민세 소득할을 「지방소득세」로 개편

[1안] 독립세방식 : 과세표준을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단일비례세율

과세구간	현행 실효세율			지방소득세 및 소득세 세율조정		
	소득세율	주민세율	총부담율	지방세율	소득세율	총부담율
1천만원이하	8%	10%	8.8%	3%	5.8%	8.8%
1천-4천만원	17%	10%	18.7%	3%	15.7%	18.7%
4천-8천만원	26%	10%	28.6%	3%	25.6%	28.6%
8천만원이상	35%	10%	38.5%	3%	35.5%	38.5%

※ 3% 독립세율을 도입할 경우 국세의 지방이양 효과 : 14,648억원(종합 소득세 신고분 4,571억원, 근로소득세 10,077억원)

[2안] 부가세방식 : 과세표준을 국세결정액으로 하고 차등세율적용

과세구간	현행 실효세율			지방소득세 및 소득세 세율조정		
	소득세율	주민세율	총부담율	소득세율	주민세율	총부담율
1천만원이하	8%	10%	8.8%	5%	75%	8.75%
1천-4천만원	17%	10%	18.7%	15%	25%	18.75%
4천-8천만원	26%	10%	28.6%	25%	15%	28.75%
8천만원이상	35%	10%	38.5%	35%	10%	38.50%

※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 더 많은 세원이양효과 발생

- 도입 초기에는 국세청에서 징세를 대행해주는 방법 채택

2. 자주재원 확충노력 강화

- ◆ 지방세의 본래 목적인 자원조달 기능을 강화하고
- ◆ 자치단체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로서 신세원 개발

□ 현 황

○ 지방세의 자치재원 조달기능 미흡

- '07년 자치단체예산(일반+특별회계) 111조 9,864억원 중 지방세는 38조 732억원으로 34%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방세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가 140개 단체(57%)임

의존재원 42조 5,673(38.0%)		자체재원 69조 4,191(62.0%)		
교부세 214,083 (19.1)	보조금 211,590 (18.9)	지방세 380,732 (34.0)	세외수입 278,509 (24.9)	지방채 34,950 (3.1)

-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이나, 50%미만이 215개(87%) 단체이며, 10%미만인 단체도 13개임

※ 50%미만 : 시 81.3%(61/75), 군 100%(86/86), 자치구 87%(60/69)

○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응익과세 연계성 미흡

- 환경오염시설, 기반시설 투자 등 행정·재정수요 유발시설
- 화력발전소,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등 주민기피시설
- 지역별 특정한 부존자원 등

○ 과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자원조달기능 억제

- 비과세·감면액이 지방세수의 약 10%에 해당
- 비과세·감면의 기득권화 및 특권화

□ 추진과제

구 분	추진방안	비 고
<p>① 신세원 개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적 차원의 신세원 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체 유치시설에 대한 과세 검토 예) 관광시설, 카지노, 법인·공장유치 등 -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과세 검토 예) 화력발전소, 쓰레기 매립장 등 ○ 지방세 미과세로 과세대상 간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세원 개발 	
<p>② 비과세·감면 축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감면의 점진적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 있는 법인/단체 등 - 감면의 기득권화·특권화 지양 ○ 신규감면 억제, 「연차적일몰제」 도입 ○ 목적세의 전면적 과세 전환 	<p>지방세 지출예산 제도와 병행추진</p>
<p>③ 국·공유재산 과세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용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의무자 : 사용수익자 	
<p>④ 사업소세 확대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소세의 현실화 방안 검토 ○ 주민세소득할과 함께 『지방소득세』로 개편하는 방안 검토 	

① 신세원 개발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 과세대상 확대 노력 ('03년 이후)

- 취득세 : 골프연습장('03년), 승마회원권('05년)
- 지역개발세 : 원자력발전('05년, 0.5원/kwh)

○ 자치단체에 행정·재정수요 유발에 대한 응익적 차원과 자치단체의 지역개발 노력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치·기피 시설 등에 대한 과세방안 검토·추진 필요

< 발전방안 >

○ 지방자치단체 유치시설 과세방안 검토

- 관광시설·카지노, 법인·공장, 정부투자기관 등 자치단체가 기반 시설 투자를 하거나 환경오염 등 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

※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조세 및 세외수입

- 국가 귀속 2,174억원, 지방 귀속 616억원 ('05년 기준)

○ 주민 기피시설 과세방안 검토

- 화력발전소, 쓰레기매립장,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비용을 현실화하고, 기피시설의 유치를 인센티브화할 수 있는 과세방안 마련

※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연구용역 추진

- 충남 등 5개 시도 발주, 연구용역 추진 ('07.9 완료 예정)
- 전기요금 인상요인이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과의 중복문제 등에 대한 신중한 정책적 검토 필요

② 비과세 · 감면 축소

< 현황 및 문제점 >

- 비과세 · 감면 규모가 총 지방세의 약 10% 정도로 지방세의 재원 조달 기능 억제

※ '05년 기준 비과세 · 감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조 례	조 특별	점유율	
		소 계	비과세	감면			지방세수	%
합 계	35,337	22,355	10,527	11,828	7,562	5,420	359,773	9.8
취득세	14,295	8,210	3,193	5,017	2,823	3,262	66,490	21.5
등록세	12,601	8,023	2,004	6,019	2,502	2,076	67,837	18.6
재산세	4,052	3,652	3,043	609	332	68	25,878	15.6
기타	4,389	2,470	2,287	183	1,905	14	199,569	2

- 국세('05년 기준)의 경우 총 국세의 14.4%

- 감면의 기득권화 및 특권화

- 수익이 있는 법인 및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감면으로 인한 조세지원의 기득권 의식 팽배

< 발전방안 >

- 기존 비과세 · 감면의 점진적 축소 조정

- 수익 있는 법인/단체에 대한 감면 축소 조정

- 신규 감면은 최대한 억제, 불가피한 경우 「연차적 일몰제」 또는 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도입

예) - 3년간 100%, 4~6년간 50%, 7~9년간 25%, 10년이후는 과세전환 등
-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취득 · 등록세 등을 5년간 과세 유예

- 목적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는 특정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의 응익세이므로 전면적 과세 전환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과 병행하여 전면적 정비 추진

③ 국·공유재산에 대한 과세방안 검토

< 현황 및 문제점 >

- 특정목적에 임대·사용되는 국·공유재산의 경우 지방세는 비과세되는 반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막대한 지방재정 수요 발생
예) 의왕컨테이너 기지 일대는 철도청 소관 국유재산으로 재산세 등이 비과세 되나, 도로시설·환경정비 등에 막대한 지방재정 소요
- 민간이 국·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를 비과세함은 불합리
예) 과천시 소재 서울랜드는 서울시 소유로 재산세 등 비과세
- 국가에서는 지방에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과세에 원칙적으로 반대

< 발전방안 >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할 경우
 - 국가재정의 감소, 보조금·교부금 제도운영 등을 이유로 관계부처 반대의견이 예상되고
 - 국가·자치단체에서 예산 미확보시 체납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 사용수익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하는 방안 검토

※ 그간의 추진경위

- '97 지방세법개정시 국·공유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과세를 추진한 바 있으나, 관계부처 이견으로 개정 조항 삭제
- '99년 지방세법개정시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권」에 대하여 임차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재산세 과세를 추진하였으나, 관계부처의 반대로 삭제
- ❖ '07.1.1부터 국가·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부동산 임대,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지방세를 과세하는 나라

○ 미 국

- Washington주 : 임차사용세(leasehold excise tax)

· 납세자 : 비과세 대상 국·공유재산의 임차사용자

· 세 율 : 임대료의 12.84%(주정부분 6.84%, 기초단체분 6%)

- California주 : 재산세(property tax)

· 납세자 : 비과세 대상 국·공유재산 점유사용권(possessory interests)을 가진자

· 과 표 : 재산가액

○ 덴 마 크

- 국·공유 토지와 건물에 대해 토지세와 건축세(service tax)과세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임)

○ 이스라엘

- 이스라엘 : 소유자(owner) 가 아닌 사용자(user)에게 과세

□ 교부금을 지급하는 나라

○ 캐 나 다

- 연방정부는 민간에 임대된 연방재산에 대해 재산세 대신 자치단체에
대체 교부금(grants in lieu of taxes)지급

○ 일 본

- 국유재산 소재지 단체에 고정자산세액 만큼 교부금 지급(고정
자산세 과표의 1.4%)

※ 교부대상재산 : 임대재산·공항·국유림·발전시설·수도시설 등

④ 사업소세 확대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

-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노동집약적 시대의 변수인 종업원수 등에 기초하고 있어 산업환경 등 지방세 과세환경 변화 미반영
 - 종업원할 50인 초과, 재산할은 330m² 초과시 과세
 - 재산할의 경우 m²당 250원으로 경제환경 변화 미반영
-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이나
 - 종업원수와 사업소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역경제발전과 지방세수 연계성 결여

< 발전방안 >

- 사업소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현실화방안 검토
 - 종업원할의 경우 노동변수의 변화를 고려한 면세점 재검토
예) 면세점을 총급여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 재산할의 경우 물가인상·화폐가치 등을 고려 세율조정 검토
예) 현행 m²당 250원인 제한세율을 표준세율로 변경하고,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하는 방안(탄력세율 허용) 등
- 지역경제와 사업소세가 연계되도록 과세요건 전면 재검토
 - 지역경제와 연계성이 큰 세목으로 목적세에서 보통세 전환 검토
 - 인적·물적 설비외의 과세요건 재검토
 - 사업소의 거래외형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 등
 - ※ 일본의 사업세 :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외에 지방세로서 거래외형을 기준으로 도부현세를 과세하고 있음

3. FTA 체제와 지방세제 정비

- ◆ FTA 체결 등 국제화시대에 적응력제고를 위한 법제정비와
- ◆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제의 간소화·단순화·전문화 추진

□ 현 황

○ FTA 체제에서 농축산업의 위축 및 소득수준 감소가 예상되므로 농축산업 관련 지방세제 정비 필요

- 농업(축산업 포함)의 경우 수입 증가(향후 15년간 2.3억원), 생산 감소(연평균 6,698억원) 예상

※ 산업별 무역수지 증감 내역 (향후 10년간 연평균, 단위 : 백만달러)

	수출 증가		수입 증가		무역수지	
	對세계	對미	對세계	對미	對세계	對미
농업	-	-	168	273	△168	△273
수산업	-	0.6	-	9.6	-	△9.0
제조업	2,342	1,327	216	581	2,125	745
계	2,342	1,328	384	864	1,957	463

○ 지방세법의 간소화·전문화 필요성 제기

- 지방세법·령의 빈번한 개정으로 법체계의 복잡성 심화

※ 1961.12 지방세법 전면개정 이후 법률 일부개정 99회, 시행령 일부개정 112회, 시행규칙 일부개정 59회

- 현행 지방세법은 단일법으로 전문화 한계와 유연성 부족

※ 국세는 총칙(기본법 등), 세목(소득세법 등), 감면(조특법) 등으로 전문화

○ 지방세 지출(비과세·감면)의 기득권화 만성화로 재원배분을 왜곡하고 있고, 정확한 기초통계의 체계적 관리 필요

□ 추진과제

구 분	추진방안	비 고
<p>① 농축산업 관련 세목의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간 FTA 체결에 따라 농축산업 관련 지방세 정비로 경쟁력 강화지원 -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기간 연장 또는 국세전환방안 검토 - 도축세의 폐지 또는 수수료전환 방안 등 	
<p>② 부가세적 성격의 목적세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정비 - 본세 성격인 재산세 등과 통폐합 방안 ○ 목적세 본래의 성격에 맞게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강제화하는 방안 등 검토 	
<p>③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 '10년 전면시행 목표, '07년 시범실시 -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지출예산 편성기준안 작성 등 추진 	
<p>④ 지방세법 및 조직 전문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분화·전문화 추진 - 재산, 소득·소비 분야별로 분법 ○ 지방세 담당조직 전문화 추진 - 분화·전문화된 법제와 연계한 조직 전문화 추진 	

□ 세부추진 대안검토

① 농축산업 관련 세목의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 한·칠레 및 한·미 FTA 체결로 산업경쟁력이 취약한 농축산업 부문 전반의 생산 및 소득수준 감소가 예상되고
- 농축산업 관련 세목인 농업소득세 및 도축세는 세수규모는 영세함에도 농축산업에 과세되어 경쟁력저하의 원인으로 작용
 - 농업소득세 : 5년간(2005~2009년) 과세 중단('04년 41억)
 - ※ '04.6월 “농업경영체 합리화 및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경제장관간담회의에서 과세중단 결정
 - 도축세 : 소, 돼지 도축시 과세(소 4만원, 돼지 2,300원 정도)
 - ※ '05년 세수 : 485억원(지방세 총액 39조 9,868억원의 0.13%)

< 발전방안 >

-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기간 연장 또는 폐지(국세전환)
 - 농업소득세 과세중단기간을 연장하거나, 소득과세의 일원화를 위해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전환 등 검토
- 도축세 폐지방안 검토
 - 도축세 폐지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감소와 환경오염·구제역 등 예방재원 확보 곤란
 - ※ 경북 고령의 경우 총 지방세 117억원 중 도축세 15.7억원으로 13.4%
 - 수수료로 전환할 경우 다른 수수료와의 중복 문제 등 검토
 - ※ 일본 1950년, 대만 1987년 각각 도축세 폐지, 중국 2000년 과세중단

② 부가세적 성격의 목적세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 지방세의 목적세는 5개 세목에 전체 지방세의 18% 수준

※ 지방세 목적세의 세수('07년 예산기준) > (단위: 억원)

계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68,858	16,584	5,247	39,860	6,457	710

- 보유세(재산세)의 경우 각종 부가세(surtax) 형태로 목적세가 부과되고 있어 세제의 복잡화 초래

※ 재산세관련 목적세 : ①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② 도시계획세(재산세 과표의 0.15%), ③ 공동시설세(주택건축물부분 과표의 0.05%~0.13%)

- 목적세임에도 세수규모의 영세성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본래의미 퇴색

< 발전방안 >

- 재산세의 부가세적 성격인 목적세를 본세와 통합하는 방안 검토

- 도시계획세의 경우 도시계획 유무에 관계없이 도시계획구역 내 과세대상에 일률적으로 과세하기 위해 재산세와 통합
- 공동시설세의 경우 세수의 영세성으로 소방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재산세와 통합

※ 재산세는 기초세이나 도시계획세는 특별·광역시인 경우 광역세이고, 공동시설세는 광역세이므로 기초와 광역간 세목재배분과 연계 검토 필요

-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의 재산세와 통합하지 않을 경우

- 목적세 본래의 의미에 맞게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방안 검토

③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 지방세지출은 사실상 재정지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표현되지 않아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우며(숨은 보조금)
- 기득권화·만성화되어 일몰기한이 도래하여도 정비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음

※ 비과세·감면 규모('05) : 3조 5,377억원, 지방세총액 대비 8.9%

< 발전방안 >

- '10 전면시행을 목표로 '07년에 우선 선도단체 시범실시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지출예산 편성기준안 작성 등 추진

- 지방세지출은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서 - 재정지출(직접지출)에 대응하여 세입 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
-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지방세지출 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

< 기대효과 >

- 지방세지출 내역을 예산의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재정 책임성 제고 및 세수기반 공고화(broad base, low rate)
- 세제지원이 기득권화·만성화되는 것을 통제하여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④ 지방세법 · 조직 전문화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 현행 지방세법은 단일법으로 편성되어 있어
 - 전문화에 한계가 있고, 관련규정 개정애 유연성 부족
 - 경감규정이 산재(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례 등)되어 납세자가 알기 어렵고, 경감의 남발 우려
- 지방세 관련 조직이 제도(세제)와 운영(세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연계성이 미흡하여 정책적인 피드백 기능 부족

< 발전방안 >

- 지방세법 분화 · 전문화 추진
 - 재산 · 소득 · 소비 등 분야별로 세제의 전문성 · 유연성을 높이고, 국민이 찾기 쉽고 알기 쉬운 지방세법으로 탈바꿈

- 지방세법
 - 제1장 총칙
 - 제2장 도세
 - 제3장 시·군세
 - 제4장 목적세
 -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지방세감면특례법
- 지방세범처벌법

※ 장기적으로는 세목별로 분법방안 검토

- 지방세 담당조직 전문화 추진
 - 분화 · 전문화된 법제와 담당조직을 연계, 조직별로 소관법률에 대한 입법단계부터 해석, 운영 및 사후 제도개선까지 책임 운영

- 지방세제팀
- 지방세정팀
- 지방세심사팀



- 지방세정책팀
- 부동산세제팀
- 소득·소비세제팀
- 지방세심사팀(지방세심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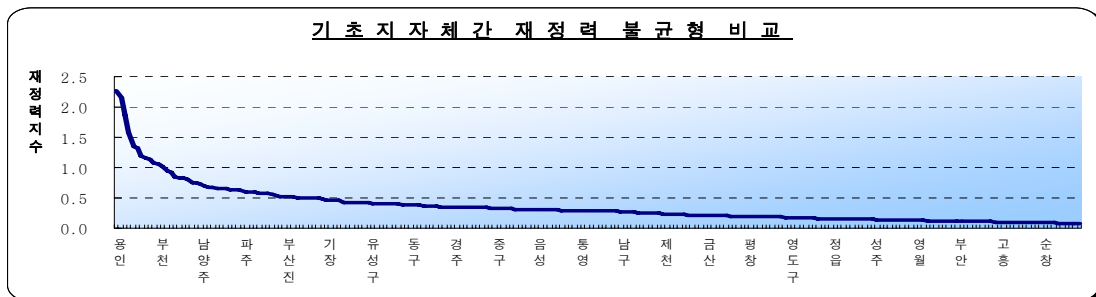
IV. 지방세 발전기반 확충

4. 지방분권지원(차등분권)

- ◆ 자치계층별 특성에 맞는 세원 재배분의 추진과
- ◆ 지역별 특수 부존자원 과세가 가능하도록 과세자주권 확대

□ 현황

- 지방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으로 지역균형발전 저해
 - 자치단체 계층별 특성을 감안 세원의 재배분 검토 필요



- 지방분권 지원을 위한 과세자주권 확대 필요
 - 현행 과세자주권 허용범위 : 탄력세율 운영,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등
 - 법정외세 과세가 불가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세목을 신설하거나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
- 공평과세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세원 개발 추진 필요
 - 과세대상간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세원 발굴
 - 특정자원 또는 행위에 대한 응익적 차원의 세부담 검토

□ 추진과제

구 분	추진방안	비 고
<p>①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의 완화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자치구간 불균형 우선 추진 - 기타 단체의 경우 「광역시 - 구」, 「도 - 시」, 「도 - 군」 등 맞춤형 세목 재배분 추진 ○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 재배분과 연계 추진 	
<p>② 과세자주권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외세 도입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로 세목 신설 등 과세권 행사 ○ 임의세 제도 확대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에서 과세요건을 정하되 - 조례에서 과세여부 결정 	
<p>④ 지방세 확충 자치단체 인센티브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유치시설 과세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시설, 카지노, 법인·공장 유지 등 ○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과세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력발전소, 쓰레기 매립장 등 	

□ 세부추진 대안검토

①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력의 격차가 커서 지역균형발전 및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에 한계

구분	'07 지방세수입(억원)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총액	평균	최고	최저	격차	최고	최저	최고	최저
특별시 구	14,100	564	강남 2,560	강북 173	14.8배	서초 90.5	관악 28.3	강남 1.98	종량 0.28
광역시 구	6,129	139	인천서 315	부산서 52	6.1배	인천중 51.0	부산서 18.7	부산진 0.52	대구남 0.09
도의 시	67,134	872	수원 3,821	문경 135	28.3배	성남 71.0	남원 12.7	용인 2.27	문경 0.12
도의 군	10,701	129	울주 1,051	울릉 15	70.0배	울주 50.3	강진 8.10	울주 0.66	신안 0.07

- 광역시의 구, 도의 시·군 지역은 지역간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재정력이 열악하다는 문제점 내포(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제외)

< 발전방안 >

- 지방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완화 추진
 - 서울시 자치구간 세원불균형 완화 우선 추진
 - ※ '07. 4.13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세로 전환하는 공동과세 방안에 합의, 공동과세 비율(40~50%)은 차기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
 - 기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도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세」, 「도세와 군세」 등 '맞춤형 세목 재배분' 추진
- 지방자치단체간 세원 불균형완화와 국세·지방세간 세원 재배분의 연계 추진으로 국세의 지방이양 추진

②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 각 지역에 편재해 있는 세원에 대해 자치단체가 적합한 세목과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 지방세 가격기능의 활성화 등을 위해 과세자주권의 확대 필요
- 우리 헌법 제59조는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세목을 신설하거나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며, 판례의 태도임
 - 환경오염·공해유발 등 주민기피 시설에 대하여 응익적 차원에서 조례로 과세권을 행사하려 하여도 행사불가

< 발전방안 >

- 자치단체가 조례로 세목신설 등 과세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정외세 도입방안 검토
 - 지방세법에서 법정외세 도입 및 허가(협의)기준 설정
 - 조례로 과세대상 등 과세요건 설정, 과세권 행사
- 자치단체가 선택하여 과세할 수 있는 세목(임의세 제도) 확대
 - 지방세법에서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의 범위, 과세표준의 기준 등을 정하고, 조례에서 과세여부 규정

※ 임의세 제도

- 공동시설세 :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공동시설세 과세 선택권 부여(실제 과세하는 지자체 없음)
- 일 본 : 도시계획세, 수리지역세 등 임의세 운영
- 프랑스 : 청소세, 보행도로세, 광고벽보세 등 40여종의 임의세 운영

3 지방세 확충단체 인센티브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지방세로서 신세원을 개발하여 과세할 경우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인 기준재정수입으로 반영되어 실제적인 재정증가 효과 반감
 - 지방교부세 산정 : 자치단체별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

기준재정수요액 <small>9개측정항목·26개세항 목별 기초수요+보정 수요±인센티브</small>	-	기준재정수입액 <small>보통세의 80%(기초수입) +보정수입±인센티브</small>	=	재정부족액 <small>조정율 적용 ※07: 88.4%</small>	=	보통교부세
---	---	--	---	--	---	-------

※ 보정수요 : 기초수요외에 법령규정등에 의한 추가수요(지방교육비전출금등)
 보정수입 : 기초수입외에 법령규정등에 의한 추가수입(목적세·경상세외수입, 정산분 등)

- 현행 지방세 관련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기준
 -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 수입액 산정에서 제외
 - 주민세 개인균등할 : (동중단체 평균세율 - 당해단체 세율) × 부과인원
 - 탄력세율 적용 : 표준세율 적용세액 - 당해단체 세율 적용세액
 - 지방세 세원 발굴 : 관련세율 × 적용률(3년간 30~10%)

< 발전방안 >

- 지방세 세원확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 검토
 - 전국 공통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외에 각 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신세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강화방안 검토
 - 예) 기준재정수입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 지방세정 분석진단 실시방안 검토
 -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정부 포상 및 인센티브 지원

5. 인적자원 개발

- ◆ 지방세분야 인적자원 개발·확충으로 정책품질을 향상하고
- ◆ 전문가들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방세 거버넌스 체제 확립

□ 현 황

-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는 물론 전문연구 인력의 불형평 심각
 - 지방세연구 인력 등 인적자원 확충 시급

《지방세와 국세의 조직·인력 비교(2007.1.1 현재)》

구 분	지 방 세	국 세	비 고
세 목	취득세 등록세 등 16개세목	법인세, 소득세 등 16개세목	
세수('07)	38조 732억원	147조 3,025억원	4배
공 무 원	세제 ※ 1관 1개팀	행정경제부 세제실 107명 ※ 1실 3국 1관 13과	6배
	세정	국세청 본청 801명	45배
	심사	국세심판원 105명	10배
	지방	세무서(지방국세청포함)17,022명	1.7배
연구기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명	한국조세연구원 100명 KDI(235명)에서 정책연구	

- ◆ 국세종합상담센터 128명, 국세공무원교육원 66명, 국세청기술연구소 32명 등
-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전문지식 활용기회 부여필요
 -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세무사 합격률 부진
 -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의 승진·전보직위 한정으로 사기저하
- 지방세를 둘러싼 납세자·국회·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연구와 토론의 장 마련 필요
 - 지방세 연구모임이나 학회 등 전무

□ 추진과제

구 분	추진방안	비 고
① 지방세연구원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가 운영주체가 되는 지방세법상 독립법인 설립 ○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되, 지방세법에 기금설치 근거마련 	
② 지방세무사 제도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무사 도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무사법 제정 - 지방세무사 직무범위에 맞는 시험과목 선정 - 지방세 업무 일정기간 종사자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 	
③ 지방재경직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무직을 지방재경직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 예산, 회계 담당공무원 포괄 	
④ 지방세 협력 네트워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포럼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전문가 30~50명 - 중장기 지방세제 발전계획 등 토론 ○ 지방세학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전문가 200~300명 - 지역별 분회 설치 지방세 연구 활성화 	

□ 세부추진 대안검토

① 지방세연구원 설립

< 현황 및 문제점 >

○ 지방세 연구기능 취약으로 지방세 발전 한계

- 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재산과세 위주에서 탈피하여 신장성이 높은 소득·소비과세 도입 등 세원 재배분 필요

※ 국세는 조세연구원 100명, 지방세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원 2인이 담당

○ 급변하는 조세환경과 세제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위하여 지방세 연구개발 기능강화 시급

- 개별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방세 연구기능 확충에 한계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배분방안」 등 정책대응능력 강화

< 발전방안 >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가 되는 지방세법상 독립법인 설립

- 시·도에서 추천하는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 이사회가 운영주체가 되는 지방세법상 독립법인 설립

○ 재원부담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기금설치 근거마련

- 재원마련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근거를 지방세법에 마련(임의규정), 재원출연 방법에 대한 자율성 부여

○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결정에 따라 기초단체 참여여부 결정

② 지방세무사 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 지방세 납세지원 요구수준 증대

- 지방세 규모의 증가와 신고납부 세목의 확대 등으로 지방세무 서비스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 - 지방세규모 '01년 26.6조 → '05년 36조 → '07년 38.1조

- 불복청구건수 '02년 2,768건 → '06년 5,108건

- 현재의 납세지원제도(세무사·공인회계사 등)로는 지방세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납세자 기대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세무사 등은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구하여 지방세 납세지원 등 업무수행

○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진작 및 전문지식 활용

-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전문성을 진작시키며 세무직 근무기간 동안 축적된 전문지식의 활용으로 납세지원 최적화

< 발전방안 >

○ 「지방세무사」 신설 검토

- 지방세무사법 제정
- 지방세부사의 직무범위와 시험과목 선정
- 지방세 및 국세경력자에 대하여 시험의 일부면제 등

예) 1차면제 : 지방세 경력 10면이상인 자, 국세경력 20년이상인 자 등

2차면제 : 지방세 경력 20년이상인 자, 지방세경력 10년이상인자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경력자 등

3 지방재경직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 지방자치단체 세무인력 중 세무직 충원율은 81.8%로 전문화가 낮은 편이며, 승진 등 인사운영에 적체현상 발생

(단위 : 명)

구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세무공무원	11,485	20	363	2,317	3,919	2,982	1,353	531
세무직	9,399	-	-	1,684	3,518	2,992	1,205	-
충원율	81.8%	-	-	72.7	89.8	101	89.1	-

※ 지방세무직렬은 6급이하 공무원에 한하여 운영되고 5급이상은 행정직으로 통합(국세의 경우도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만 세무직으로 운영)

※ 8급 공무원 충원율(101%)이 높은 이유는 9급 → 8급 자동승진에 기인함

- 지방재정과 지방세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인력운영은 별도 관리되고 있어 상호연계성 및 시너지효과 달성 불가

< 발전방안 >

-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조직·인력에 대한 진단 추진

-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세 조직·인력과 업무량 분석

- 「총액인건비」 시행 등 변화된 인력운영 여건에 맞추어 지방세 조직·인력 표준모델 개발

- 「지방재경직」 도입방안 검토

- 지방재경직 = 지방세 + 예산 + 회계 + 회계감사 등

- 지방재정 전문화 향상, 세정과 재정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 거양

- 지방재경직 정착을 위한 완충방안 검토

④ 지방세협력 네트워크 구성

< 현황 및 문제점 >

- 지방세 증장기 발전계획 등 정책과제에 대하여 지방세 전문가들의 폭넓은 논의 없이 관계기관의 건의와 행정내부 토론 등을 거쳐 제도개선 추진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미흡
- 조세관련 연구 학회가 12개 정도 있으나, 지방세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회가 없어 학문적 지원 기능 미약
 - ※ 조세법학은 한국세법학회(1986년 설립), 조세실무분야는 한국조세연구포럼(2000년 설립), 국제조세는 한국국제조세협회(1983년 설립), 세무회계는 한국세무학회(1988년 설립)에서 전문적인 활동
- 법조계, 학계, 정계 등 지방세관련 전문가들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방세 저변 확대에 거버넌스 체제 확립 필요

< 발전방안 >

- 지방세 포럼 구성·운영
 - 학계, 법조계, 세무사·회계사, 국회, 관련부처, 자치단체 공무원 등 지방세 전문가로 30~50명으로 구성, 정례적으로 개최
 - 증장기 지방세제 발전계획 등 연구와 토론회 마련
- 지방세 학회 구성
 - 학계, 법조계, 회계사·세무사 등 지방세 전문가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등 200~300명으로 구성
 - 지방세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한 전문적인 연구로 건설적 비판과 정책대안 제시
- 지방세 포럼 및 학회 구성과 운영을 지원할 실무기획단 운영

6. 정책지원체계 재확립

- ◆ 지방세 과표 제도의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통계 제공
- ◆ 대주민 서비스 행정 개선 및 구제제도의 발전방안 모색

□ 현황

- 지방세 과표 체계가 복잡하고 지역 및 건물 특성 반영에 한계

< 현행 지방세 과표체계 >

구 분	현행 과표	산정방법	산정기준 결정	과표결정권자	
부 동 산	토지	개별공시지가	시가방식 (공시가격)	건교부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지 : 건교부장관 개별필지 : 지자체장
	주택	개별주택가격	시가방식 (공시가격)	건교부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주택 : 건교부장관 - 개별주택 : 지자체장 공동주택 : 건교부장관
	건물	시가표준액	원가방식	행자부장관 (조정기준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축기준가액 : 국세청장 각종지수 등 : 지자체장
	시설물	시가표준액	원가방식	행자부장관 (조정기준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장
부동산이외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시가방식	행자부장관 (조정기준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장 	

- 지방세 관련 정책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미흡
 - 부과징수실적 위주의 단순 통계로 정책통계 활용에 한계
 - 개별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전산시스템이 구축·운영되어 세원정보의 공동이용 및 전국적인 전자서비스 제공 곤란
 - 행자부 지방세정팀 기능이 상담민원에 얽매어 권위 있는 유권 해석, 지방세 공무원 교육, 정보화 등 정책기능 상실
 - ※ 국세의 경우 국세종합상담센터(125명)와 관세상담센터(25명) 설치운영
 - 지방세 구제제도의 독립성이 약하고 준사법적 절차 미흡

□ 추진과제

구 분	추진방안	비 고
① 지방세 과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부동산 평가방식 도입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건물의 경우 소득접근법, 신축주택의 경우 원가법 등 ○ 과표결정에 대한 사전 조정 및 불복청구 제도 도입 	
② 지방세 정책통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정책통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통계 제공 ○ 지방세 통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③ 지방세 통합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보시스템 개발완료 : '06.3 - 전국 자치단체 보급 표준화 ○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운영 	
④ 지방세 상담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상담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자부와 자치단체간 기능 분화 ※ 「지방세 민원상담 처리규정(가칭)」 제정 ○ 「지방세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유권해석 기능 강화 	
⑤ 지방세 구제제도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심판관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기능의 독립성확보 - 소액 사건, 반복적인 사건 등 신속처리 ○ 준사법적 절차 수행의 법적기반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변권, 회피·기피제, 질문검사권 신설 등 	

□ 세부추진 대안검토

① 지방세 과표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부동산중 토지와 주택은 시가방식의 공시가격을 과표로 활용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활용하여 적용
- 부동산중 건물과 시설물, 부동산 이외 차량 등 기타물건은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조정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결정고시
- 현행 과표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 상가 등 건물과표의 경우 원가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어 시가와 괴리
 - 저유조 등 시설물 과표는 현실화율이 낮아 부동산과 불형평 발생
 -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노인 등 담세력이 부족한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 경감 필요성 제기
- 재산세 등 부과이후 불복시 납세자 부담이 가중함으로 사전에 불복제도를 통하여 구제 절차마련 필요

< 발전방안 >

- 다양한 부동산 과표 평가방식 도입 방안 검토
 - 물건별 취득·활용 형태에 따른 과표산정 방식 재검토
 - 예) 상가건물의 경우 소득접근법, 신축주택의 경우 원가법 등
- 현행 원가방식의 일반건물 과표체계의 개선 추진
- 노인 등에 대한 과표감산제도 도입으로 세부담 완화 방안 검토
- 과표결정에 대한 사전 조정 및 불복청구제도 도입방안 검토

② 지방세 정책통계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 부과징수실적 위주의 통계작성
 - 「지방세정연감」 등 통계정보가 세목별·과세대상별·자치단체별 부과징수실적 위주로 작성되어 단순 보고통계 수준에 그치는 한계
- 원천과세자료로부터 정책통계를 생산·취합하는 시스템이 미비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통계정보의 주기적 갱신 및 개선 미흡
- 공급자 위주의 통계정보 생산·제공으로 학계·전문가, 납세자 단체 등 수요자가 알고자 하는 정책통계수요 욕구 미 충족

< 발전방안 >

- 지방세 정책통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통계제공
 -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시민단체 등 정책수요자 대상으로 현황통계 및 가공통계에 대한 정책통계수요 조사
 - 발굴된 통계지표를 정확성, 시의성, 활용가능성 기준으로 심의, 관리대상지표(예 : 30대 지표 등)를 선정하고 통계표(layout) 작성
 - 통계정보의 시각화, 평가적 의미해석 등을 포함하는 통계지표 정보 매체를 발간하고, 인터넷으로 통계정보 제공
- 지방세 통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각 자치단체에서 원천과세자료로부터 정책통계를 생산하고, 자치단체 정책통계를 추출하여 전국통계를 생성하는 시스템 구현

③ 지방세 통합시스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 전국적인 전자신고납부 서비스 제공 및 세원정보 공유 시스템 부재
 -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구축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시군구↔시도↔중앙 간 정보시스템 연계망 구축 필요
- 자치단체 보급 『표준정보시스템(LTIS)』 개발 ('05.1~'06.3월)
 - 표준시스템 자치단체 확산 보급 47개 시·군·구 ('06. 12월까지)
 - 포털서비스, 중앙↔지방간 연계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06.4~12월)

< 발전방안 >

- 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보급 추진
 -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시스템 보급추진('08년 완료목표)
 - 통합시스템을 표준시스템 보급기관에 순차적으로 연계, 전자신고·납부 등 포털서비스 제공
 - 재정관리시스템 및 국세 등 유관기관 세원정보와 연계 확대
 -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운영 방안 마련
 - 전자신고·납부 등 납세서비스의 무장애·무중단 운영
 - 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운영 관리체제 구축 (자치정보화조합) 및 『지방세통합관리센터(가칭)』 설치·운영 법적근거 마련 (지방세법) 등
 - 도로명 새주소 체계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선 추진
- ⇒ 최고의 전자 납세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전자세정 구현

4 지방세 상담 기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2006 상담민원 현황 및 문제점

(단위 : 건)

구 분	계	서 면	인 터 넷	전 화
계	20,988,437 (100%)	44,952 (100%)	38,974 (100%)	20,904,511 (100%)
행 자 부	41,945 (0.2%)	710 (1.6%)	6,235 (16.0%)	35,000 (0.2%)
시 · 도	698,760 (3.3%)	1,4373 (3.2%)	922 (2.4%)	696,401 (3.3%)
시 · 군 · 구	20,247,732 (96.5%)	42,805 (95.2%)	31,817 (81.6%)	20,173,110 (96.5%)

- 지방세 부과 · 징수 관련 과세사실 확인 등 단순 상담민원은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처리 : 20,946,492건(99.8%)
- 행자부의 경우 법률해석 사항이나 복잡한 민원사항으로 업무과중 : 지방세정팀 5명이 41,945건 담당(1인 1일 평균 37건)

○ 행자부 지방세정팀 기능이 상담민원에 얽매여 권위 있는 유권해석, 지방세 공무원 교육, 정보화 등 정책기능 상실

- ※ 지방은 전화응대에 1일 평균 30%, 중앙은 40~50%의 업무시간 소비
- ※ 국세의 경우 국세종합상담센터(7팀 125명)에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정부서는 정책 개발과 납세편의 제고에 주력

< 발전방안 >

- 지방세 상담기능 강화 추진 - 행자부와 자치단체간 기능 분화
 - 행정자치부 : 법령에 관한 서면 유권해석 담당
 - 자치단체 : 세정운영 전반에 대한 전화, 인터넷, 방문상담 담당
 - ※ 「지방세 민원상담 처리규정(가칭)」 제정, 홍보기간 거쳐 실시
- 「지방세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유권해석 기능 강화

5 지방세 구제제도 발전

< 현황 및 문제점 >

○ 심사청구담당 인원 및 사건처리 현황

구 분	'03	'04	'05	'06	07.4. 현재
처리건수	282	402	556	1,156	262
증가율(%)	-	42.6	38.3	107.9	
처리인원	5	9	6	8	9

※ 국세심판원 인원 현황 : 105명(심판관 5, 조사관 13, 4~5급 55)

○ 심사청구의 선택적 이심제 도입, 재산세부담이 증가에 따라 안건 지속적 증가

- '06년 선택적 이심제 청구 : 28.7%(1156 \ 332)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급격한 증가('03~'06년 지방세 평균증가율 :17.5%)

○ 과세대상 불명확 · 감면대상 불형평, 납세자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집단적인 심사청구 경향

○ 구술심리 허용 등 준사법적 절차확립으로 소송의 필요적 전심절차 기능강화 필요

< 발전방안 >

○ 상임심판관제 도입(장기적으로 지방세심판원 신설)

- 소액 사건, 반복적인 사건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상임심판관의 결정으로 대체

○ 준사법적 절차 수행의 법적기반 보강

- 상임심판관의 회피, 기피제 도입
- 상임심판관의 조사와 심리를 위한 질문검사권 신설

V. 주요 Agenda 로드맵 (안)

